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0
----------	-----

제출년월일 : 2000.2.2.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제6060호, 1999. 12. 28. 공포)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시세로 신설하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방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시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시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나. 주민세 소득세할증 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다. 매매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1조).

라.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절의2).

마.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함(안 제48조).

바.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시 사무처리비용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리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함.(안 부칙 제2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를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득세합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합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합을 관한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합은 법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합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합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합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법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고 본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정

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3절의2(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2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2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주행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천만원이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4천만원이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8천만원이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6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8조, 제6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
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
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182
입 안 자	세 무 과 장	박 세 영
	시 세 담 당	김 찬 주
	담 당 자	정 재 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1.~3.(현행과 같음) 4. <u>주행세</u> 5.~8.(현행 4.~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세에 관한 <u>이의신청 및 과세표준</u> <u>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 등을 심의·</u> <u>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u> <u>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u> <u>다.</u> ②위원회의 <u>안건을 분장·심의하기</u> <u>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u> <u>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u> <u>과위원회를 둔다.</u> ③제2항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u>심의사</u> <u>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u> <u>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u>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 <u>이의신청을 심의·</u> <u>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 를</u> <u>두고,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u> <u>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표준심의위</u> <u>원회를 둔다.</u> ②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 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 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⑦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⑧위원회의 위원중 세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직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①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⑤시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와 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삭 제〉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
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
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
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법
제1조제1항제6호의 보통징수의 방법
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제23조(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
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 설>

제23조의2(소득세환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환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환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환은 법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환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법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생략)
〈신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합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합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
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제1항 내지 제3항-----
-----2,000원 미만-----
-----.

제3절의2 주행세

제42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
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
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
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2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2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
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구에 납부
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
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신 설〉

제42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세율) -----

제48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
 1,000만원이하 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제62조(신고납부 등)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
 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
 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④ (생략)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천만원이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4천만원이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
 8천만원이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62조(신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
 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
 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